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한나희(Na-hee Han)

부산대학교 박사후연구과정 연구원, 제1저자

하충룡(Choong-lyong Ha)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
| II. 조사대상상품 범위의 결정기준 | V. 결 론 |
| III. 조사범위판정에 관한 사례검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주제어 : 조사대상상품, 국내동종상품, 반덤핑관세명령 범위, 복합상품 기준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FTA를 통하여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수없이 나오고 있다.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FTA 체결국의 통상법을 비롯한 수입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필수록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즉, 개별국가들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창설 이래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역규제수단인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WTO성립 이후에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¹⁾ WTO가 덤핑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짓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을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거나 상세하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초 한·미 FTA 발효를 목표로 미국은 2011년 10월, 우리나라는 11월에 해당협정에 비준하였고, 현재 미국은 이행법안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의 핵심인 반덤핑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미국반덤핑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품을 덤핑하는 불법적인 행위규제보다는 시장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²⁾ 한마디로 미국의 반덤핑법은 ‘덤핑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³⁾

미국반덤핑법에 의거하여 반덤핑관세부과 요건은 덤핑의 존재와 피해의 발생이다.⁴⁾ 반덤핑제도의 운용에서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덤핑여부⁵⁾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이다. 먼저 미국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대상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⁶⁾ 따라서

1) 보통, 어떤 회사가 상품을 자국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한다. GATT 1947에서 또한 덤핑을 어느 일국의 상품이 (그 국내 시장에서의) 당해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상권 내에 반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GATT 1947 Article VI.

2) Daniel E. Feld,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preventing actual or threatened injury to domestic industry resulting from sale in United States of merchandise at prices lower than country of origin”,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42 *ALR Fed* 821, 2009, §4.

3) 하충룡·한나희, “사례를 통한 미반덤핑법상 상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9, p.269.

4) 19 U.S.C. § 1673.

5) 특히, 덤핑관정과정은 공정가격, 수출가격 및 기타 관련 가격들의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과 동시에, 외국생산자의 관련국내시장과 미국시장에서 조사대상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기능을 한다. Joseph E. Pattison, *Antidumping & Countervailing Duty Laws*, Thomson Reuters., June 2009, § 5:1.

6) 무역위원회, 「무역규제제도 이해하기」, 무역위원회, 2009, p.21;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조사대상상품이라기 보다는

국내 생산자가 특정 수입상품을 지목하여 덤핑제소를 하는 경우, 각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이들 수입상품의 동종상품을 찾아 덤핑마진과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상품의 범위가 이후 덤핑 및 피해조사단계에서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⁷⁾ 이에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통하여 반덤핑협상초안에서도 조사대상상품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도 관세법에서 조사대상상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 물리적, 상업적, 기능적, 생산의 동질성을 검토하고 있다.⁹⁾ 미국 또한 상무부가 조사대상상품의 정의를 통하여 국내동종상품 및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조사기관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상품 범위를 결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반덤핑 조사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반덤핑관세명령의 부과범위 뿐만 아니라, 향후 동종상품의 범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조사대상상품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국내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Alan과 Judith는 조사대상상품의 범위가 향후 반덤핑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판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였다.¹⁰⁾ 조영재는 WTO 반덤핑협정상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협정 내용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¹¹⁾ 또한 임병우는 조사대상상품이 덤핑마진과 국내산업 피해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 사건을 분석하여 반덤핑절차의 진행방향을 제시하였다.¹²⁾ 안민호는 DDA의 쟁점을 다루면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으로 수입되어 피해를 초래한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¹³⁾ 한편,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반덤핑법에서 덤핑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대상상품의 범

“고려중인 상품(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으로 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반덤핑법의 규정하고 있는 ‘the subject merchandise’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상품”이라 칭하기로 한다.

7)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pp.211-212.

8) DDA 2007년 초안에서 5.6bis를 삽입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입수한 증거에 비추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은 수입품을 발견한 경우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TN/RL/W/213.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관련 당사국들의 의견 상충으로 2008년 초안에서는 배제되었다.

9) 무역위원회, 전제서, p.22.

10) Alan F. Hommer-Judith Hippler Bello, “The Scope of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International Lawyer*, 20 *INTLLAW* 1015, Summer, 1986, pp.1015-1024.

11) 조영재, 전제논문, pp.210-234.

12)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 제23호, 2006.7, pp.78-102.

13)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11, pp.272.

위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및 관련사례들의 검토를 통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반덤핑법 가운데 조사대상상품과 관련한 규정들과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를 하되,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문헌연구로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행정기관과 무역 관련 기관의 발간 보고서 및 자료, 그리고 Westlaw를 통하여 판결사례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II.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의 결정기준

미국반덤핑법은 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¹⁴⁾ 상품의 판매에 있어 외국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이다.¹⁵⁾ 이러한 반덤핑조사는 일반적으로 상무부에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조사신청인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통상적으로 조사신청인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덤핑조사를 요청한다. 실제 조사대상상품의 결정이 향후 덤핑률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사대상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¹⁶⁾ 즉, 조사대상상품이란 덤핑으로 수출되어 수입국의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상품을 의미한다.¹⁷⁾ 해당 범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음 일련의 규정들을 통하여 명백해 진다.

1. 조사대상상품의 범위 결정

반덤핑조사가 신청되고 나면, 상무부는 ‘우선’ 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¹⁸⁾ 국내산업은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국내동종상품 생산량의 합계가 조사대상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생산자를 의미한다.¹⁹⁾ 따라서 국내산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동종상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

14) 19 U.S.C. §1673(1).

15) 즉, 미국반덤핑법은 서비스의 판매가 아닌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충룡·한나희,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p.151.

16) 법무법인 총정, 「1차 생산품의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02, p.18.

17) 안민호, 전계논문, p.272.

18) 19 U.S.C. § 1673a(b).

다. 또한 국내동종상품은 조사대상상품과 특성이나 용도에 있어 비슷하거나 가장 유사한 상품을 의미하므로,²⁰⁾ 국내동종상품의 판정을 위하여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신청 시 신청자가 수입상품을 정의할 때는 현행 미국조화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for the U.S.: HTSUS)에서 상품의 적절한 관세분류를 명시해야 하며, 고유한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에서 투입되는 원자재, 수입상품과 미국상품 간 차이 및 상품의 용도를 포함하여 상품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기본적인 정의를 하여야 한다.²¹⁾ 이후 상무부는 조사신청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²²⁾ 또한 조사대상범위를 결정에 있어 상무부는 신청 전 협의나 신청된 이후라도 동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개시통지에서 조사신청범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를 요청하고 있다.²³⁾ 하지만 해당 견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반덤핑법은 조사신청 시, 그리고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허용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상무부는 조사의 범위(parameter)를 설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 ...(중략)... 이러한 고유의 권한이 없다면, 만약 어떤 정보를 상무부가 이용할 수 없거나 조사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상무부와는 관계없이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 시 제시한 범위를 근거로 한 최초의 범위판정에 계속해서 구속되기 때문’이다.²⁵⁾

하지만 반덤핑법상에 조사대상상품에 대한 정의의 부재로 인하여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동 범위를 조사신청자의 명세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상무부는 조사대상상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20일간의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인들이 제시한 명세만으로 해당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1) 조사신청시 동종상품 생산자

조사대상상품의 범위가 확정되면, 상무부는 조사신청자들이 반덤핑조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제도적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⁷⁾ 반덤핑조사신청을 할

19) 19 U.S.C. § 1677(4)(A).

20) 19 U.S.C. § 1677(10).

21) Robert Carpent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USITC, Pub. 4056, December 2008, pp.1-7-1-8.

22) *Mitsubishi Heavy Indus. Ltd. v. U.S.*, 986 F.Supp. 1428, 1433 (1997).

2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p. cit.*, Ch.26, p.3.

24) 19 U.S.C. § 1673(a)(b)(1).

25) *Cellular Mobile Telephone and Subassemblies From Japan*, 50 FR 45447, 45449 (1985).

26) 법무법인 총정, 전제서, p.17.

27) 한편, 당사자규정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대한 산업의 지지정도에 대한 상무부의 판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반면, ITC는 조사대상상품의 수입으로 효과를 얻고 있는 관

당시부터 덤핑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즉 제조적격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사신청인은 이해당사자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내 조사대상상품, 또는 조사대상상품을 사용 혹은 이와 유사한 특성의 상품의 제조업자, 생산자 및 도매업자; 둘째, 미국내 조사대상상품 또는 조사대상상품을 사용 혹은 이와 유사한 특성의 상품의 제조, 생산 및 도매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근로자단체나 공인노동조합; 셋째, 조사대상상품 또는 조사대상상품을 사용 혹은 이와 유사한 특성의 상품을 제조, 생산 및 도매하는 구성원의 다수 및 통상 혹은 거래협회;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이해당사자의 연합이나 협회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²⁸⁾ 반덤핑법에서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실제 관계없는 당사자에 의한 조사개시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이 대다수인 요즘, 과연 누가 국내생산자,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인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사자적격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 산업의 정의 및 동종상품의 특성에 관한 쟁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²⁹⁾ 특히, 동종상품은 사례별로 정의되기 때문에 제조적격 당사자의 범위 또한 달라진다.

2) 산업지지

조사신청자가 제조적격으로 판정되고 나면, 상무부는 해당 반덤핑조사신청이 산업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반덤핑법은 조사신청자의 산업지지가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자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산업지지의 기준은 조사개시 이전에 반덤핑조사 신청에서 국내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로 정하고 있다. 즉, 조사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업자이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할 것 혹은, 조사신청의 지지자들은 최소한 전체 국내 생산의 25%를 차지할 것 이다.³¹⁾ 따라서 조사신청을 지지하는 생산업자가 이를 반대하는 자들보다는 많이 조

련당사자를 해당 국내산업에 포함시킬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산업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 고준성 외 7인, 「미국통상법 연구」, 법무부, 1996, p.357.

28) 19 U.S.C. §§ 1673a(b) and 1677.

29) Joseph E. Pattison, *op. cit.*, § 2:5. 예를 들어, *Certain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Peru*에서 알파카 특산품이라 하더라도 기계로 만든 알파카 스웨터와 기타상품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통경로로 판매되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고급섬유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상무부는 미국생산업자가 그러한 상품과 관련하여 조사신청업체가 제조적격 당사자라고 판정하였다. *Certain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Peru*, 50 FR 9871, 9872-9873 (1985).; 반면, *Certain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Sri Lanka*에서, 상무부는 수공의 알파카 의류 및 수제 카펫과 테피스트리는 물리적 특성 및 가격, 유통경로, 소비자의 인식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신청자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경우도 있다. *Certain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Sri Lanka*, 50 FR 9826, 9827 (1985).; *Certain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Turkey*, 50 FR 9816 (1985).

30)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ntidumping Manual*, Department of Commerce, July 2009, Ch.2, p.8.

사신청을 지지해야 하며, 해당 지지자들은 최소한 25%의 생산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조사신청이 지역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는 경우, 50%와 25%의 산업지지 기준은 지역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³²⁾

이처럼 상기 서술한 규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신청인과 산업지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 결정

상무부는 어떠한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동종상품 범위를 획정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의 판정에 포함된 조사대상상품의 명세가 일반용어(*general terms*)로 작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³³⁾ 환언하면, 반덤핑관세명령이 공표된 이후 범위의침(*scope ruling*)은 이해 당사자가 동 명령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상품에 대한 해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들을 근거로 상무부는 공식 조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조사가 타당하지 않다면, 상무부는 신청된 상품이 현재 명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시 최종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공식 조사가 타당하다면, 상무부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코멘트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해당 판정을 확정하여 공표한다.³⁴⁾ 주목할 점은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을 해석할 수 있으나 명령의 범위를 확장시킬 순 없다는 것이다. 각 절차는 이전 단계에서 내린 판정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판정은 그저 본래의 반덤핑관세명령 용어(*terms*)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당 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상무부가 동 범위를 확장하였다면 이는 미국반덤핑법에 위배되는 것이다.³⁵⁾

어떻게 상무부가 특정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방규정에 정해놓고 있다. 먼저, 상무부는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상무부와 ITC의 판정에 포함된 상품의 명세를 검토하여야 한다.³⁶⁾ 즉, 상품의 명세 및 기타 판정을 통한 분석이다. 유

31) 19 U.S.C. § 1673a(c)(4)(A).

32) 19 U.S.C. § 1673a(c)(4)(C).

33) 19 C.F.R. § 351.225(a).

34)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p. cit.*, Ch.26, pp.3-4.

35) *Ibid.*, Ch.26, p.3.

36) 19 C.F.R. § 351.225(k)(1).

의할 것은 조사신청에 포함된 상품의 명세를 제시함에 있어, 조사신청자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전체 상품들을 포함하여 명세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상무부가 상품의 명세 및 기타상품판정을 근거로 한 국내동종상품 범위판정의 명세가 결정적이라면, 해당 명세만을 근거로 최종범위판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상품의 명세 및 기타상품판정을 근거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한다. (i) 상품의 물리적 특성, (ii) 최종 구매자의 기대, (iii) 상품의 최종용도, (iv) 상품이 판매되는 유통경로, (v) 상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법.³⁷⁾ 해당 규정을 간단히 “복합상품(Diversified Products)”기준이라고 칭한다.³⁸⁾

Ⅲ. 조사범위판정 관련 사례검토

상무부는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면 조사신청이 산업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반덤핑관세명령이 내려진 이후 어떤 상품이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³⁹⁾ 그러한 국내동종상품은 조사대상상품이 영향을 미친 범위가므로, 조사대상상품의 범위결정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사신청시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1. 조사대상상품의 범위판정 사례

1)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사건

상무부가 조사신청자의 조사대상상품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국내동종상품을 정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한국관련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사건에서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상무부는 관행대로 조사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37) 19 C.F.R. § 351.225(k)(2)

38) Diversified Products Corp. v. U.S., 572 F.Supp. 883, 889 (1983).

39) 한편, 상무부의 동종상품 결정은 ITC와는 개별적이며 구별되는 것이다.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ITC는 통상적으로 ① 물리적인 특성과 용도, ② 대체성, ③ 유통경로, ④ 상품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 ⑤ 공통적인 제조설비 및 생산과정과 근로자, ⑥ 적절한 경우, 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충룡·한나희,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2, pp.166-167.

특성을⁴⁰⁾ 근거로 상품을 구분하였다.⁴¹⁾ 하지만 다이아몬드 무게에 대하여 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실제 무게로 측정하여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무게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품으로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으로 업체별로 수천가지의 상품이 존재하는데, 각 상품이 다이아몬드 무게의 미세한 차이로 인하여 다른 상품으로 분류됨으로써 덤핑마진 산정 시 대부분의 수출상품은 동일상품이 아닌 유사상품과 비교되었다.⁴²⁾

위 사례는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생산자연맹 등이 지난 2005년 5월 상무부와 ITC에 한국과 중국을 덤핑혐의로 제소하면서⁴³⁾ 문제가 된 사건이다.⁴⁴⁾ ITC는 예비조사에서 긍정판정을 상무부는 예비조사에서 한국업체에 6.15~11.25%의 덤핑 마진을 부과, 최종판정에서 한국업체에 6.43~26.55%의 덤핑률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ITC가 피해최종판정에서 피해가 없다는 부정판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산 상품에 대한 덤핑제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⁴⁵⁾

하지만,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생산자연맹이 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하여 승소 판정을 받으면 서⁴⁶⁾ ITC가 기존 결정을 반복, 한국 및 중국산 상품으로 인해 미국산업에 피해가 있었다는 긍정판정을 내렸다.⁴⁷⁾ 동 판정에서 ITC는 미국내 생산자들과 한국 및 중국업체가 물리적 특성을 비롯하여 최종용도, 유통경로, 대체성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ITC 판정에 대해 최종 확인판정을 내렸다.⁴⁸⁾ 한국 업체가 ITC의 결정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은 상무부에 반덤핑부과명령 공고 및 현금예치금징수를 명령하였다.⁴⁹⁾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사례 가운데 조사대상상품과 동종상품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분쟁은 US-Softwood Lumber사건이다.⁵⁰⁾ 동 사건의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에 조사당국이 조사대상상품, 즉 고려중인 상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40) 조사신청자가 제시한 물리적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상품형태; ②직경; ③접착방법; ④Cutting Edge(적선 절인); ⑤다이아몬드 메쉬(mesh) 크기; ⑥다이아몬드 집중도(무게); ⑦다이아몬드 등급; ⑧세그먼트 높이; ⑨세그먼트 두께; ⑩세그먼트 길이; ⑪세그먼트 개수; ⑫코어 재질; ⑬코어 형태; ⑭코어 두께.

41)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70 FR 77135-01, 77139 (2005).

42) 법무법인(유) 태평양,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07.10, pp.41-42.

43)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70 FR 24612 (2005).

44)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70 FR 35625-01 (2005).

45)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71 FR 39128, 39129 (2006);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Inv. Nos. 731-TA-1092-1093, USITC Pub. 3862 (2006).

46) Diamond Sawblades Manufactures Coalition v. U.S., 2008 WL 576988 (2008).

47)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Inv. Nos. 731-TA-1092-1093, USITC Pub. 4007 (2008).

48) Diamond Sawblades Manufactures Coalition v. U.S., 2009 WL 289606 (2009).

49) Diamond Sawblades Manufactures Coalition v. U.S., 650 F.Supp.2d 1331 (2009).

50) 동 사건은 미국의 캐나다산 Softwood Lumber에 대한 최종덤핑판정에서 상무부가 Bed Frame Components, Finger-jointed Flangestock, Eastern White Pine, Western Red Cedar을 동종상품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캐나다가 상무부의 동종상품 분류는 고려중인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쟁점인 사건이다. WTO, United States-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이하: US-Softwood Lumber), WT/DS264, 2004.

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⁵¹⁾ 이에 패널은 덤핑판정과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덤핑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상품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것이 예정된 상품이므로 WTO 반덤핑협정에서 ‘고려중인 상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덤핑으로 주장된 상품과 비교되는 것이다. 한편, 피해판정에서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덤핑된 상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국내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말한다고 하였다.⁵²⁾ 그러므로 WTO 반덤핑협정 Article 2.6은 동종상품과 ‘고려중인 상품’을 비교하도록, 즉 고려중인 상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고려중인 상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상품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려중인 상품이 동종상품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⁵³⁾ 패널은 상무부가 캐나다 국내시장의 소비상품을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같은 정의를 이용하여 국내산업의 범위를 획정한 것은 동종상품의 정의방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⁵⁴⁾

2) Fujitsu 사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결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인 Fujitsu 사건을 검토해보았다. 동 사건에서 조사신청자는 상무부에 벡터슈퍼컴퓨터의 덤핑판매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일본산 벡터슈퍼컴퓨터로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보드의 필수부분이 벡터하드웨어 장치로 된 모든 컴퓨터로 정의하였고, 상무부 또한 이를 따랐다.⁵⁵⁾ 이에 대하여 Fujitsu(이하: 원고)는 해당 정의에 비-벡터슈퍼컴퓨터들도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나,⁵⁶⁾ 상무부는 조사개시통지에서 조사신청인의 조사대상상품의 정의를 근거로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였을 뿐,⁵⁷⁾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무부는 벡터슈퍼컴퓨터와 비-벡터슈퍼컴퓨터의 특성과 용도를 정확히 구분한 후, 국내동종상품으로 정의한 것이며 조사대상상품이 미국으로 공정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었다고 결정하여 덤핑공정판정을 내렸다고 하였다.⁵⁸⁾ 원고는 상무부가 국내동종상품을 결정할 때 조사신청자가 제시한 정의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 상품의 특성 및 용도 전체를 근거로 국내동종상품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무부가 전형적으로 국내동종상

51) *Ibid.*, paras, 7.153-7.156.

52) *Ibid.*, para, 7.152.

53) *Ibid.*, para, 7.153.

54)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pp.637-638.

55) *Vector Supercomputers from Japan*, 61 FR 43527 (1996).

56) 원고는 벡터 및 비-벡터 슈퍼컴퓨터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유통경로 및 최종용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Fujitsu Ltd. v. U.S.*, 36 F.Supp.2d 394, 395-396 (1999).

57) *Vector Supercomputers From Japan*, 61 FR at 43528-43529.

58) *Vector Supercomputers From Japan*, 62 FR 45623, 45623-45624 (1997).

품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ITC의 동종상품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동종상품 판정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⁹⁾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먼저,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두 컴퓨터가 상이한 컴퓨터아키텍처를 가진다고 한 상무부의 판정에 대하여 첫째, 조사개시통지에서 상무부가 국내동종상품을 확인하는 주요 요소로써 해당 특성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원고의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대량의 보고서에서 벡터슈퍼컴퓨터의 아키텍처가 동 컴퓨터의 특성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상품이 서로 상이한 성능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원고의 제출서류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물리적 특성에 대한 상무부의 판정은 실질적인 증거로 지지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⁶⁰⁾

다음으로, 동 법원은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원고의 제출서류에서 두 컴퓨터가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당 서류에서 또한 여전히 특정 어플리케이션은⁶¹⁾ 벡터슈퍼컴퓨터만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²⁾ 동 법원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⁶³⁾ 이를 근거로 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판정 사례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린 이후, 조사 및 재심과정에서 어떤 상품이 해당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명세 및 기타 판정기준과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Duferco 사건

Duferco 사건은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품이 이미 발효된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처음으로 쟁점화 되었던 사건이다.⁶⁴⁾ 미국 철강업체들은 벨기에산 CTL

59) Fujitsu, 36 F.Supp.2d at 398.

60) Fujitsu, 36 F.Supp.2d at 399-400.

61) 예를 들어, 벡터슈퍼컴퓨터는 선형대수학 및 대수행렬방정식을 계산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Vector Supercomputers from Japan, 61 FR at 43529.

62) Fujitsu, 36 F.Supp.2d at 400.

63) Fujitsu, 36 F.Supp.2d at 397.

64) Duferco Steel Inc. v. U.S., 296 F.3d 1087, 1095 (2002).

(cut-to-length)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신청에서, ‘조사대상상품은 압연탄소강관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정의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각주에 압연상품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하였다.⁶⁵⁾

이후 *Duferco*(원고)는 CTL탄소강관 명령에 압연과정 동안 만들어지는 비-직사각 횡단면으로 된 열연바닥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범위지침을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양각에 패턴이 있는 탄소강관이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⁶⁶⁾ 이에 대하여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에서 양각에 패턴이 있는 바닥판을 포함한다는 용어는 없었으나, 해당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되었다고 한 판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래의 조사신청은 압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양각에 패턴이 있는 압연상품을 포함하는 HTSUS정의를 참조로 하였다. 둘째, 제시된 상품에 대한 매치기준(특성)의 포함여부에 이의가 없었다. 셋째, 최종명령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던 양각에 패턴이 있는 유니버설 밀 플레이트와 달리, 압연탄소강관의 양각 패턴을 배제하기 위한 표현이 없었다. 따라서 상무부는 원고의 상품이 최종명령에 속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동 판정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적절하게 명령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⁶⁷⁾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다.

연방고등법원은 수많은 경우의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검토해왔으며, 이에 대한 일반원칙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대한 상무부의 자체 해석을 상당히 지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⁶⁸⁾ 하지만 동 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의 해석과정⁶⁹⁾ 명백하게 되보하는 것이라 보았다. 중요한 점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검토 목적이 해당상품을 조사신청에 포함했는지 혹은 조사범위에 속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 최종명령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무부의 최종 반덤핑관세명령은 어떤 상품이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때문에 동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최종명령에 해당상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하였다.⁷⁰⁾

최근 연방고등법원은 반덤핑사건에서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 것이 상무부 권한의 근거가

65) HTSUS에서 “압연상품“은 횡단면이 (정상가격이 아닌) 입체 직사각 압연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압연상품은 압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과 관통, 골, 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Duferco*, 296 F.3d at 1090-1091.

66) *Duferco*, 296 F.3d at 1093-1094.

67) *Duferco*, 296 F.3d at 1094.

68) *Ericsson GE Mobile Communications Inc. v. U.S.*, 60 F.3d 778, 782 (1995).

69)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특정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무부는 먼저 조사신청에 근거하여 해당상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상무부가 본래의 조사신청범위에 ... 상품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명령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동 상품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없는 한 이후의 각 단계로 이어진다.’ *Duferco*, 296 F.3d at 1095-1096.

70) *Duferco*, 296 F.3d at 1096.

될 수는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⁷¹⁾ 법령에서 상무부의 권한을 부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연방고등법원도 명령에서 상무부의 권한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상무부의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조사신청과 조사과정에 따라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해석하더라도 분석의 기초는 여전히 반덤핑관세명령의 용어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 법원은 상무부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해석은 명령 그 자체의 용어를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상무부의 판정을 부정한다고 판결하였다.⁷²⁾

2) Eckstrom 사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명세 및 기타 판정기준과 복합상품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던 Eckstrom 사건은 대만 및 한국산 스테인리스용접강관이음쇠(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이다.⁷³⁾ 상무부는 조사신청과 관련한 강관이음쇠를 HTSUS 7307.23에 해당하는 상품이라고 정의하였으며,⁷⁴⁾ ITC는 피해조사를 받는 상품을 파이핑시스템에서 파이프부분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주조 및 단조된 스테인리스스틸이며 그러한 부품은 HTSUS 7307.23.00 이하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⁷⁵⁾ 조사결과 상무부는 한국 및 대만산 상품에 대하여 최종 반덤핑관세명령을 공포하였다. 이후, 대만의 Eckstrom(이하: 원고)는 캐스트피팅(cast fitting)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상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상무부가 캐스트피팅이 명령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하자 이를 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하였다.⁷⁶⁾ 동 법원은 상무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원고는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쓸데없이 확장시켜 부적절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연방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였으며⁷⁷⁾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상무부는 사용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을 “폭넓게” 적용한 것이라

71) FAG India S.p.A. v. U.S., 291 F.3d 806, 816 (2002).

72) Duferco, 296 F.3d at 1097-1098.

73) Certain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from Korea and Taiwan, 57 FR 26645-02, 26645-26646 (1992).

74) 스테인레스 용접 강관이음쇠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음 조건들로 파이핑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요소인 경우 사용된다. (1) 강철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파이핑시스템의 부식이 발생; (2) 시스템 자체에 의해 시스템내에서 재료의 오염을 예방; (3) 고온(화씨 300도 이상)으로 있는 경우; (4) 초저온에 있는 경우; (5) 고압으로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Eckstrom Indus. Inc. v. U.S., 254 F.3d 1068, 1069-1070 (2001).

75) Eckstrom, 254 F.3d at 1070.

76)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최초 범위판정이 캐스트피팅을 명백하게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상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Eckstrom Indus. Inc. v. U.S., 27 F.Supp.2d 217 (1998).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을 확정하였다. Eckstrom Indus. Inc. v. U.S., 70 F.Supp.2d 1360 (1999); Eckstrom, 254 F.3d at 1071.

77) Eckstrom, 254 F.3d at 1071-1072.

고 주장하였으나 연방고등법원은 상무부가 동 명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명령 자체의 용어와 충돌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⁷⁸⁾ 둘째, 조사신청은 명백하게 캐스트 피팅이 아닌 주조피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사신청 시 관세율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파이프피팅의 제조가 캐스트피팅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들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⁷⁹⁾ 셋째, ITC의 최종판정에서 캐스트피팅이 명령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ITC는 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에 대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는 조건이 용접연결과 부식, 산화방지 및 고온과 압력에 견디는 힘을 영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파이프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캐스트피팅이 고온이나 압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ITC의 최종판정은 동 명령에 캐스트피팅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⁸⁰⁾

연방고등법원은 상무부가 환송명령으로 이행한 공식범위조사를 포함하여 상무부의 이전의 범위판정들로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복합상품기준을 검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연방규정은 상무부가 조사신청, 조사 및 판정에 비추어 동 명령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복합상품기준을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가 바로 복합상품기준에 의거한 분석을 진행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정하였다.⁸¹⁾

78) Eckstrom, 254 F.3d at 1074-1075.

79) Eckstrom, 254 F.3d at 1074.

80) 뿐만 아니라 한국산 수입상품의 판정에서 조사대상 파이프피팅의 제조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부 피팅의 생산, 특히 stub-ends는 원재료의 가열과 단조가공의 이행을 요한다. 동 제조과정은 캐스트피팅에는 적용할 수 없다.’ Eckstrom, 254 F.3d at 1075.

81) Eckstrom, 254 F.3d at 1075-1076.; 한편 Allegheny Bradford Corp. 사건 또한 앞서 살펴본 대만 및 한국산 스테인리스용 접강관이음쇠의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반제품으로 빗각부분이 없는 위생관(sanitary/hygienic stainless)을 수입하는 Top Line(이하: 원고)은 최초의 반덤핑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종 반덤핑관세명령이 공포된 이후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상무부에 심사할 것을 요청하여 동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원고의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반덤핑관세명령에 속하는 상품과 원고의 상품이 디자인 및 평가기준, 제조, 용도가 상이함을 이유로 최종범위 명령에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상무부는 당사자들의 제출서류와 현재의 판정만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고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최종명령의 범위에 속한다는 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다.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에서 완제품 피팅의 가장자리가 빗각인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반덤핑관세명령의 요건이 아니며 반제품 피팅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를 배제시키지 않았으므로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상무부는 동 명령에서 빗각이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지적한 것이 정확하다면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러한 물리적 특성이 조사대상상품의 명세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동 법원은 Eckstrom 사건을 인용하여 상무부가 어떤 상품을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동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 명령에서 원고의 상품이 배제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Allegheny Bradford Corp. v. U.S., 342 F.Supp.2d 1073, 1073-1191 (2004).

3) Novosteel 사건

Novosteel 사건은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한 사례이다. 동 사건은 상무부가 독일산 철강후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을 공포하였던 것과 관련한 사례이다.⁸²⁾ Novosteel(이하: 원고)은 프로파일 슬래브(profile slabs)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던 중에,⁸³⁾ 상무부에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조사 개시를 요청했으며, 상무부는 예비범위판정에서 프로파일 슬래브는 후판명령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후 최종범위판정에서, 상무부는 “조사신청인의 근거 기록, 상무부 및 ITC의 판정, 기타 명령의 검토“에 근거하여 프로파일 슬래브는 조사대상상품의 성질에 부합하는 열연강관계품이지만, 해당 슬래브가 후판명령에 해당하는 압연판과 같은 품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무부는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파일 슬래브가 후판명령의 범위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⁸⁴⁾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최종범위판정에 따르면 조사신청 및 판정에서 프로파일 슬래브와 같은 특정상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동 상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조사신청자가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을 명세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들에서 명백하게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신청, 조사 및 상무부와 ITC의 판정으로 동 명령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해서,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한 상무부의 판정은 지지되는 것이다.⁸⁵⁾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⁸⁶⁾ 어떤 상품이 명백하게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 내의 상품과 충분히 유사한지와 두 상품이 동일한 상품의 부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⁸⁷⁾ 또한 동 법원은 “상무부가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⁸⁸⁾

복합상품기준에 따라, 첫째, 상무부는 두 상품이 공통된 치수 특성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내성의 정도 및 두께와 편평함의 정도에서도 후판의 전형적인 물리적 특성과 부합한다고 하였다.⁸⁹⁾ 둘째, 상무부는 프로파일 슬래브가 조사대상상품과 기계적 및 구조적으로 대체되

82)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Certain Cold-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and Certain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From Germany, 58 FR 44170 (1993).

83) Novosteel SA v. U.S., 128 F.Supp.2d 720, 723-724 (2001).

84) Novosteel, 128 F.Supp.2d at 724-725.

85) Novosteel, 128 F.Supp.2d at 726.

86) 19 C.F.R. § 351.225(k)(2).

87) Wirth Ltd. v. U.S., 5 F.Supp.2d 968, 981 (1998).

88) Novosteel, 128 F.Supp.2d at 732.

89) Novosteel, 128 F.Supp.2d at 732-733.

지 않으나, 오히려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최종용도가 확실히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⁹⁰⁾ 셋째, 상무부는 최종구매자의 기대가 두 상품의 물리적 특성의 유사성, 최종용도가 거의 동일한 것 및 관측물에 용도가 유사함 등을 근거로 유사하다고 판정하였다.⁹¹⁾ 넷째, 법원은 원고가 두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후판 거래고객 중 일부에게 프로파일 슬래브를 팔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상무부는 원고의 관측물에서 프로파일 슬래브가 두꺼운 후판 시장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두 상품의 판매경로가 중첩된다고 판정하였다.⁹²⁾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관측물 등을 이용하는 프로파일 슬래브의 광고 방법이 원칙적으로 후판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판정하였다.⁹³⁾ 상기 이유를 근거로 동 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을 지지한다고 판결하였다.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조사범위판정 사례분석 및 시사점

반덤핑조사에서 상무부는 조사개시를 위하여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린 이후 동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국내동종상품을 판정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하여 상무부의 국내동종상품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국내동종상품을 조사대상상품과 같거나, 같은 것이 없는 경우 특성과 용도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내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의 정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동종상품”에 대한 정의만을 하고 있을 뿐,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사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조사신청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⁴⁾

90) Novosteel, 128 F.Supp.2d at 734.

91) Novosteel, 128 F.Supp.2d at 735-736.

92) Novosteel, 128 F.Supp.2d at 736-737.

93) Novosteel, 128 F.Supp.2d at 738.; 이후, 수입업자는 항소했으나 연방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반덤핑관세명령의 조사 및 (범위지침)발행에 대한 조사신청은 ... 명령의 범위에서 확실하게 프로파일슬래브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 그러므로 반덤핑관세명령이 프로파일슬래브를 포함한다는 판정은 지지된다. *Novosteel SA v. U.S.*, 284 F.3d 1261 (2002).

94) 실제 이러한 사실은 사례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Kern-Liebers U.S.A. Inc. v. U.S.*, 881 F.Supp. 618, 621 (1993).

둘째,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조사신청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해당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상품의 범위 획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상품으로 영향을 받은 국내동종상품이 무엇인가 이다.

셋째, 상무부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동종상품을 정의하면서 ITC의 동종상품 테스트⁹⁵⁾를 전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사개시에서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조사신청인의 명세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⁹⁶⁾ 또한 조사신청인이 제시한 정의 이외 기타 자료들을 검토한다.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되는 상품을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면 상무부는 이를 적용한다.

요약하자면, 조사신청시 수입상품을 정의할 때는 현행 HTSUS에서 상품의 적절한 관세분류를 명시, 고유한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에서 투입되는 원자재, 수입상품과 미국상품 간 차이 및 상품의 용도를 포함하여 상품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기본적인 정의를 하여야 한다.⁹⁷⁾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WTO DDA 규범의장초안은 조사대상상품을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⁹⁸⁾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상품을 정의하도록 추가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중인 상품"은 조사나 재심에 대상인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고려중인 상품은 동일한 기본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수입된 상품으로 한정되어진다. 모델 및 유형, 등급, 품질과 같은 요소에서의 차이는, (고려중인 상품과 수입상품이) 동일한 기본 물리적 특성을 공유한다면 고려중인 동일한 상품의 일부에서 수입상품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한 차이가 고려중인 단일의 상품에서 수입상품을 제외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것인지 여부는 용도의 유사성, 대체성, 동일한 시장에서의 경쟁 및 동일한 유통 경로를 포함한 관련 요소들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⁹⁹⁾

2.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판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사대상상품의 범위, 즉 영향을 받은 국내동종상품에 대한 명세를 근거로 반덤핑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련 당사자들은 동 명령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하거나 재심과정에 어떤 상품이 포함 혹은 제외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95)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상품의 대체성; 유통경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 공통의 제조설비, 생산인력의 사용; 가격.

96) Fujitsu, 36 F.Supp.2d at 397.

97) Robert Carpent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USITC Pub. 4056, December 2008, pp.1-7-1-8.

98) 무역위원회, 전계서, p.94.

99) WTO, TN/RL/W/213, 30. Nov. 2007, Article 2.6(a).

수 있다.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조사와 관련한 사례들을 통하여 다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조사 목적은 해당상품이 조사신청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조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최종명령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어떤 상품이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동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둘째, 연방고등법원이 상무부가 내린 명령의 범위를 심사하는 경우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을 상당히 지지하지만, 상무부는 동 명령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용어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조사하는 경우, 동 명령 내에서만 해석의 재량을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조사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재량을 향유하지만 명령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명령 자체의 용어와 충돌하는 것이다.

셋째,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는 반드시 일반용어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범위명령은 반덤핑 조사신청 및 행정재심에서 제시된 사실 판정과 법적판결, 예비명령의 도움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사신청과 조사에 대한 검토는 최종명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명령자체의 용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연방고등법원은 조사신청 및 조사과정에 의거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동 명령의 분석의 기본은 “반덤핑관세명령 자체의 용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반덤핑관세명령에 쓰인 용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은 먼저 조사신청, 조사 및 판정에 비추어 명령의 범위를 해석한 다음, 해당검토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무부가 복합상품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조사신청 및 조사과정, 상무부와 ITC의 판정만으로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합상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첫째,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상품이 명백하게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과 동종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는 복합상품기준을 분석할 때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여기서, 상무부가 복합상품기준을 사례에 적용하면서 해당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종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무부가 복합상품기준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산업에 유리한 기준들로 국내동종상품을 분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어떤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에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품이 동명령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는지 않는다. 즉 관련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떤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에 의뢰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신청 뿐만 아니라 명령의 부과전에 협의를 통하여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한 ‘일반용어’로 기술해야 한다.

셋째, 복합상품기준 요건인 ‘대체성’과 관련하여, 두 상품이 완벽하게 대체되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사한 최종용도만으로 두 상품을 대체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상무부가 대체성을 판단할 때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조사대상상품은 덤핑으로 수출되어 수입국의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출국의 상품을 말한다. 해당상품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덤핑을 주는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향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의 조사대상상품에 직접적인 정의규정 부재로, 반덤핑조치를 취하려는 조사당국은 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둔 시점에 반덤핑조치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상품 및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미국 연방법원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DDA에서 반덤핑초안에 대한 내용 또한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실 FTA로 반덤핑제도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지만, 교역량 등의 증대를 생각하면 미국 상무부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에 대한 관행은 반덤핑조사개시를 비롯한 각 단계 등에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반덤핑조사에서 기준이 되는 조사대상상품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이 내려진 이후 어떠한 상품이 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각 기준들을 법률 및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상품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덤핑법은 이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하여 상무부는 조사신청인이 제시하는 상품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언하자면, 상무부는 관행

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때 국내동종상품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조사신청인의 의도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자칫 피소를 당하는 업체의 입장에선 상이한 상품이 조사대상상품과 동종으로 분류되어 억울하게 손실을 보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상무부와 조사대상상품을 판단하는 경우, 상품의 최종용도보다는 물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WTO DDA 규범의장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상무부가 국내동종상품을 결정함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법률 및 사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물리적 특성을 중시여기는 미국의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린 이후 어떤 상품이 동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과 동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상무부는 조사신청, 조사개시 및 상무부와 ITC의 판정에 포함된 상품의 명세를 검토한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기 전에, 상무부는 범위지침을 만드는 핵심자료로써 최종반덤핑관세명령 범위의 용어를 참조해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는 있지만 이를 폭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반덤핑관세명령에 대한 범위지침이 조사대상상품을 명백히 포함하거나 이를 포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용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정상품이 반덤핑명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상품의 명세 및 기타상품판정을 근거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는 추가적으로 복합상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상품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된다. 참고로 복합상품기준의 각 요소는 물리적 특성; 최종구매자의 기대; 최종용도; 유통경로; 광고·전시방법이다.

본 논문은 복잡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를 중점으로 검토하고, 해당 용어의 정의규정 부재로 인한 상무부의 관행을 관련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비준될 한·미 FTA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준성 외 7인, 「미국통상법 연구」, 법무부, 1996.
- 김승호, 「WTO 통상분쟁 관례해설(1)」, 법영사, 2007.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무역위원회, 2009.
- 법무법인 충정, 「1차 생산품의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02.10.
- 법무법인 (유) 태평양,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07.10.
-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11..
-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 제23호, 2006.7.
-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 하충룡·한나희,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 하충룡·한나희, “사례를 통한 미반덤핑법상 상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9
- 하충룡·한나희,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2.
-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 Carpender, Robert,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USITC Pub. 4056, December 2008.
- Feld, Daniel 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preventing actual or threatened injury to domestic industry resulting from sale in United States of merchandise at prices lower than country of origin”,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42 A.L.R. Fed 821, 2009.
- Hommer, Alan F. · Bello, Judith Hippler, “The Scope of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International Lawyer*, 20 INTLLAW 1015, Summer, 1986.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ntidumping Manual*, Department of Commerce, July 2009.

Joseph E. Pattison, *Antidumping & Countervailing Duty Laws*, Thomson Reuters., June 2009.

U.S.C. (U.S. Code)

WTO Antidumping Agreements

WTO TN/RL/W/213

Allegheny Bradford Corp. v. U.S., 342 F.Supp.2d 1073 (2004).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Certain Cold-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and Certain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From Germany, 58 FR 44170 (1993).

Certain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from Korea and Taiwan, 57 FR 26645-02 (1992).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71 FR 39128 (2006).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Inv. Nos. 731-TA-1092-1093, USITC Pub. 4007 (2008).

Diamond Sawblades Manufactures Coalition v. U.S., 650 F.Supp.2d 1331 (2009).

Duferco Steel Inc. v. U.S., 296 F.3d 1087 (2002).

Eckstrom Indus. Inc. v. U.S., 254 F.3d 1068 (2001).

Ericsson GE Mobile Communications Inc. v. U.S., 60 F.3d 778 (1995).

FAG India S.p.A. v. U.S., 291 F.3d 806 (2002).

Fujitsu Ltd. v. U.S., 36 F.Supp.2d 394 (1999).

Kern-Liebers U.S.A. Inc. v. U.S., 881 F.Supp. 618 (1993).

Novosteel SA v. U.S., 284 F.3d 1261 (2002).

Vector Supercomputers From Japan, 62 FR 45623 (1997).

Wirth Ltd. v. U.S., 5 F.Supp.2d 968 (1998).

WTO, *United States-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64, 2004.

ABSTRACT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Na-hee Han** · Choong-lyong Ha***

Having ahead the Korea-US FT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to be determinat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term "subject merchandise(or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n WTO Antidumping Agreement as well as U.S. Antidumping Law.

U.S. antidumping law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as "a product that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 Thus, the reference point from which the like product analysis begins is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should interpret the subject merchandise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beginning with its ordinary meaning. The note of caution is that the DOC generally exercises 'broad discretion to define and clarify the scope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a manner which reflects the intent of the pet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rvey scope of product in U.S. antidumping law through related regulations and cases. In addition, it was carefully examined because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effect on antidumping duty order.

Key word : the subject merchandise, domestic like product, scope of antidumping duty order, diversified product criteria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2011 Post-Doc. Development Progra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 Resear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